

「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9. 3(목) 평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9. 8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9. 14(월) 제21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관광과장 김광수)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2조부터 제15조의2 개정 및 「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」 제24조부터 제36조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업무가 시·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6년 4월 4일 제정된 조례임.
-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 변경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